

판 결

사 건



약정금

원 고

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1.



2.



변 론 종 결



판 결 선 고

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